

## 목회위원회 (Committee on Ministry) 운영세칙

(\*2020년 12월 1일, 제 95차 노회 승인)

- 1 책임과 권한
  1. 목회위원회는 규례서에 규정된 말씀의 선포, 성례전 집행, 계약 공동체 양육 등 노회에 위임된 목회 관련 임무(G-3.01)를 수행한다.
  2. 개체교회를 조직, 영입, 합병, 해산, 해소 및 목회관계를 수립, 해소하는 일, 목사 노회원들의 안수, 입회, 해소, 위임, 제명에 관한 일, 평신도 목회자 파송에 관한 일을 심사하고 준비하여 노회에 추천한다.
  3. 교회관할권 임무를 수행하여, 산하 교회들과 노회원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고, 전도와 행정의 분야에서 격려와 지침과 자원을 제공하며, 교회 내의 평화와 조화를 촉구하고 교회불화의 원인을 조사하며, 담임목사가 없는 산하교회를 지도 감독하며, 미조직교회 모임에서 주의 만찬을 거행하도록 허락하며, 필요시 주의 만찬을 집행할 특정 장로를 훈련하고, 해산된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목회와 관할권을 행사한다.
- 2 회의운영
  1.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시행세칙 I. 회의진행규칙 6 항에 따른다.
  2. 노회원, 직원 및 교회 관련 참고인들은 위원장의 초청이 있을 때 참석할 수 있다.
  4. 모든 안건은 요구 서류 및 근거 자료가 회의 전에 완결되었을 때 결의한다.
  5. 목사 안수/위임을 위한 행정위원회를 제외하고, 한 교회의 분규와 같은 쟁점 사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구성은 항상 중앙협의회와 공동논의를 통해 구성한다.
- 3 개체 교회 관련
  1. 교회의 행정과 목회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는 미국장로교 규례서를 따른다.
  2. 조직된 당회가 없는 교회 (개척교회, New Worshipping Community 등)의 목사, 관할권 밖의 사역, 기관목회, 보통회원에 대해서 매년 상담하여 보고한다.
  3. 교회이름 변경, 주소 이전 및 교회 부동산의 구매와 매각에 관하여 검토하고 노회에 추천한다.
  4. 매 년 목사의 최저기준 사례를 정하여 추천한다.
- 4 담임목사  
일시공석

담임목사의 일시 출타로 1 개월 이상 강단이 공석이 되고, 그 교회에 노회원 부목사가 없을 경우, 담임목사 혹은 당회는 임시 설교자(Pulpit Supply)를 목회위원회에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임시 설교자는 목회와 행정에 참여할 수 없다.

  - 1 개월 이상 설교할 임시 설교자의 설교기한은 목회위원회가 정한다.
- 5 노회가입과  
자격유지
  1. 목사회원의 분류와 규정은 규례서를 (G-2.0503) 따르며, 목사의 관계해소 및 청빙은 규례서의 규정과 (G-2.08) 목회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목사의 관계해소와 청빙 가이드라인' 별도 첨부)
  2. 미국장로교 내 타 노회 소속 목사 혹은 목회후보생이 노회 내 교회에 청빙될 경우 그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되, 동부한미노회의 신학적 입장과 함께 개인의 신앙고백을 심의한다.
  3. 노회가 인정하는 사역에 종사하지 않는 목사는 노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4. 교단 내 목사가 아닌 경우, 교단이 인정한 개혁교단 (Reformed Church) 의 목사나 ATS 에 가입되어 있는 신학교 졸업생의 안수/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졸업한 신학교 학위 및 소속 교단의 안수관계를 점검하고 개혁신앙에 대한 질문과 본 교단 목사 안수에 필요한 시험 전부 혹은 일부를 요구한다.

5. 규례서 G-2.0504 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designated term)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소 6 년이며, 한 번 지정된 기간이 지난 후 동일인을 무기한 목회관계가 아닌 지정된 기간으로 다시 청빙할 수 없다.
6. 활동회원 중 관할권 밖의 인정된 사역에 속한 목사는 매 년 그 사역을 목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타 노회 혹은 타 교단으로 이전하는 목사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당한 절차없이 이전하는 경우 이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단,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심사하여 최대 1 년간 보통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상의 자격유지는 불허한다.
8. 보통회원은 규례서에 따라 최대 3 년간 자격을 유지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명단을 삭제한다.
9. 미국장로교 소속 목사로서 전 동부한미노회원이었던 자가 노회 재가입 할 경우, 최근 신앙고백서를 제출하되 노회 석상에서는 신앙고백 낭독을 면제한다.

#### 6.1 목사 안수 I (조직교회의 청빙 과정을 통한 목사 안수; Ordination with Installation)

교회의 목사 청빙과정(Pastor Call Process)을 통해 안수를 받는 목회자는 그 교회에서 최소 1 년 사역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책임을 묻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목회위원회는 그 목사의 면직 혹은 정직 (최소 5 년 이명 불가) 등을 노회에 추천한다.

또한 목사를 청빙한 교회가 약속한 대우와 최소 1 년의 사역을 보장하지 않을 시, 목회위원회는 당회에 책임을 묻는다.

#### 6.2 목사 안수 II (청빙 과정 없는 목사 안수; Ordination without Installation)

안수후보자(전도사)가

- (1) 교회가 처한 (재정을 포함한) 여하한 상황으로 인해
- (2) 교회 개척 (총회 New Worshipping Community 포함)을 위해
- (3) 특수한 사역의 성격에 의해 (예: 해외 선교사 등)

‘청빙 과정’ 없는 목사 안수를 청원할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들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동부한미노회 혹은 미국장로교 타 노회 소속 목사후보생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2. ‘청빙약정서’ (Terms of Call) 를 제외하고 목사 안수와 노회 가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1) 교회 사역: 해당 교회가 재정적 상황 혹은 납득되는 부득이한 상황에 있을 때, 공동의회록/재정증명/목회자 대우계획을 제출하고 면담한다.  
 (2) 교회 개척: 노회의 승인으로 관할권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총회의 NWC 1 단계 (“Seed Grant”) 승인을 받고, 교인 각자가 서명한 교인명부를 첨부해야 한다.  
 (3) 특수 사역: 해당 사역의 인정을 위한 (Validated Ministry) 증명과 재정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4. 위의 조건이 충족된 후 최소 1 년 동안 해당 교회 (혹은사역을 지속해야 하고,

그동안 6 개월마다 사역보고를 목회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사역이 인정될 때, 목사 안수를 노회에 추천한다.

5. 위임이 없는 목회관계는 목회위원회에서 매년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안수 후 현재의 사역을 1 년 이내 중단하거나 타 교단으로 진출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목회위원회는 그 목사의 면직 혹은 정직 (최소 5 년 이명 불가) 등을 노회에 추천한다.

For the ordination candidate,

- (1) Due to any circumstances (including financial) in the church
- (2) For church planting (GA, New Worshipping Community included)
- (3) By nature of a special ministry (e.g. overseas missionaries, etc.)

when petitioning for “Ordination of Pastors without Installation,” the following conditions and procedures must be observed:

1. The candidate must complete the requirements for candidates belonging to the Eastern Korean-American Presbytery or other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2. Except for the “Terms of Call,” all documents required for ordination and membership in the presbytery must be submitted.
3. (1) Church Ministry: When the congregation has financial or other compelling circumstances “congregational meeting minutes, financial report, and a proposal for pastoral support” must be submitted, and an interview must take place.  
(2) Church planting: when a church is planted within its jurisdiction with the approval of the presbytery or approval of NWC Phase 1 of the General Assembly (Seed Grant), after approval, the church must submit a list of members that have been signed by each member.  
(3) Special Ministry: Validated Ministry attestation and financial information must be submitted for approval of a special ministry.
4. After the above conditions are met, the congregation (or ministry) must continue for at least one year. During that time, a ministry report 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n Ministry every six months. When the ministry is recognized, the pastor is recommended to the presbytery for ordination.
5. Pastoral relationships without mandate must be reviewed annually by the Committee on Ministry.  
In addition, in the event that the pastoral candidate ceases their ministry or moves to another denomination within 1 year of ordination without justifiable reason, the Committee on Ministry will recommend the dismissal or suspension (minimum 5 years, early restoration not allowed) of the pastor to the presbytery.

## 7 임시 목회자의 차기 위임

임시 설교자를 포함하여 모든 임시목회관계의 목회자 (목사/전도사)는 차기 위임  
담임목사/동사목사로 청빙받지 못한다.

단, 교회가 서면으로 제출한 선교 전략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목회위원회는  
노회에 추천하고 노회원 3/4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규례서 G-2.0503 b  
'임시목회관계' 참고)